#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9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김대식·곽규택·김기현

고동진 • 주진우 • 김민전

김예지 • 백종헌 • 서지영

박성민 · 정성국 · 조정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대와 같은 법률로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원격대

학은 입법불비상태로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로 운영해 옴에 따라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차별사항이 지속됨으로 써 선도적 디지털기반으로 운영해오던 원격대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대학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과 K-원격대학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 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교수방법의 연구 개발과 보급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마.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며,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 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함(안 제17조).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 여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① 원격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원격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 1.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 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 3. 원격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 4.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 5. 원격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 6. 국민의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 7.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 8. 첨단(신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10. 그 밖에 원격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 ② 협의회는 원격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사업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회비에 관한 사항
  -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그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 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

- 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파견을 원격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 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14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

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 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회원인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에 다른 협의회의 회원인 원격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보지 않으나, 그 협의회에서 회원 탈퇴 시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이될 수 있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 ·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 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임직원은 이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